

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9일
-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9일

3. 제안이유

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16125호, '99. 2. 26)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높이가 4m 미만인 불링핀 모형 또는 도로표시·옥상간판, 공중에 띄우거나 높이 4m 미만 지면표시 애드벌룬·선전탑, 비행선이용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
- 현수막, 벽보,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·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옥외광고물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
-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으로 연막,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광선 등을 벽면, 공중 또는 물체에 투시하여 표시하는 방법금지

-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 연면적 3천㎡ 이상의 건물 벽면에 설치한 게시시설에는 현수막을 4개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함
-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모든 업소에 표시가 가능토록 완화. 단, 업소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, 건물의 연면적 500㎡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이내 허용
- 연립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업소는 업소당 1개에 한하여 최대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
 -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
 -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, 휴양콘도미니엄
 -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, 종합휴양시설, 전문휴양시설
-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5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있는 자의 성명, 주소, 상호, 상표, 전화번호,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도안에 한하여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창문면적의 1/2 이내로 함
- 전광류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25% 이상으로 함
-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
-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함
 -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
 -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
 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, 건축,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

- 옥외광고업종사자의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며, 광고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,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
 -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
 -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
 - 향토예비군법,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
 -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모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을 보면

첫째, 허가신청 구비서류의 첨부면제 광고물의 종류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, 검인 등으로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는 조치·방법, 신고로써 표시기간의 연장·변경, 추가 규정이 필요한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, 가로형 간판 표시신고 수수료 산정 기준 조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후속조치로 24건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

둘째,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 추가, 가로등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별도 규정하거나 안전도 검사기준의 명문화, 신고시 구비서류 첨부 폐지 등 7건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며 - 416 -

셋째, 옥상간판·옥상 애드벌룬의 수평거리 제한 완화,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등 2건의 개정·신설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, 기타 자구수정 등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